

- 2022년도 제6회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-

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제6회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3월 3일

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채용 개요

가. 근무기간: 최초 1년 (최대 5년)

- 근무실적 및 채용 필요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 가능
- 업무 특성상, 장기 휴가(휴직) 등은 불가

나. 채용분야

임용직급	임용분야	임용인원	근무부서	직무내용
일반임기제 지방공업 서기보 (주 40시간 근무)	농업기계 관리	2명	농촌 자원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농기계임대사업 예약접수 및 민원인 응대·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관리· 농기계 임대차계약 서류 관리·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세입 관리· 임대농업기계 유지 및 부품 관리·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컨설팅자료 관리 등 임대사업 전반·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
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(주 35시간 근무)	건강생활 (운동처방)	1명	보건소 (건강생활지원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건강상담실 운영 (기초체력 측정 및 상담, 운동처방·지도)·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· 만성질환 예방 운동 교육 및 홍보· 기타 보건소 공통업무 지원
	안전요원	13명	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시립중앙도서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위해요소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· 청사 방호, 방법에 관한 사항· 민원안내 및 행정업무 지원 등·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·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

2

근거 법령

- 가. 지방공무원법
- 나. 지방공무원 임용령
- 다.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라.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- 마.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- 바. 원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

응시 요건

가. 일반요건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정지 또는 제한이 되지 아니한 사람
- 국 적: 대한민국
- 응시연령: 18세 이상 (2004. 12. 31.이전 출생자)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(단,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 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자격 및 경력 요건 [*기준일: 공고일 현재]

경력증명 관련 공통사항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. ◦ 필수 기재사항 ※미기재 시,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무기간*(주당 근무시간 포함), 담당업무 기재 -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(소속, 직위, 성명, 연락처)를 기재하며, 발급기관 관인 날인 	
<p>*근무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근(주40시간 이상) : 경력 전부 인정 · 비상근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 ex) 2년간 주20시간 경력 → 1년으로 인정 ·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경력인정 기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임기제: <u>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</u>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<u>퇴직 후 3년</u>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- 시간선택제임기제·한시임기제: <u>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</u>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<u>퇴직 후 10년</u>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◦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	

임용분야	자격·경력 요건
농업기계 관리 (일반임기제)	<p>【필수】 「국가기술택격법」에 따른 <u>농기계정비기능사 또는 농업기계산업기사 또는 농업기계기사 자격증</u>을 소지한 자로 <u>1년 이상</u> 공공기관, 민간법인 등에서 농기계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【우대사항】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(자격증 소지자)</p>

건강생활 (운동처방) (시간선택제 임기제)	<p>【필수】 ‘운동사(운동처방사)’ 또는 ‘국민체육공단’에서 인증하는 1급 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(자격종목:보디빌딩)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운동처방·교육, 건강관리 업무 등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※관련분야 학사학위: 사회체육과, 생활체육과, 레저스포츠학과, 운동처방학과, 체육교육학과 등</p>
안전요원 (시간선택제 임기제)	<p>【필수】 1년 이상 공공기관, 민간법인 등에서 <u>경호·방호·방법·경비 등 실무경력이</u> 있는 사람</p> <p>【우대사항】 아래 자격(면허)증 소지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경비업법」에 따른 경비지도사 (기계경비지도사 포함) 2. 「소방시설법」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(2급 이상) 3. 「응급의료법」에 따른 응급구조사 (2급 이상)

※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, 면허증 반드시 제출 바람

4 보 수 수 준

임용분야	연봉액
농업기계관리	38,473,000원
건강생활(운동처방)	35,341,440원
안전요원	30,378,000원

- ※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가지급
- ※ 상기 연봉액은 기본연봉·기본수당(직급보조비·정액급식비 등) 합산액이며 상기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
- ※ 기본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의 해당 직급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(9급(마급)의 경우 상한액의 71% 또는 60% 기준으로 책정)
- ※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)

5

시 험 방 법

가. 1차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등 응시요건 적합여부 심사

※ 서류전형 기준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관련 경력, 자격증 등

나. 2차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면접평정 요소*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

※ 면접평정 요소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|
| 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㉣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|
| ㉤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|

6

시 험 일 정

가.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

- 시험공고: 2022. 3. 3.(목)~3. 14.(월)
- 원서접수: 2022. 3. 10.(목)~3. 14.(월) 18:00까지
(공휴일 제외, 마감 후 추가·수정접수 불가)
- 접수방법: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

【방문 접수】

- 접수처: 원주시청 7층 총무과 인사팀 (대리접수 가능)
- 접수시간: 평일 09:00~18:00 (11:30~13:00 제외)
- 접수 전 시청 1층 민원과(6번창구)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후 접수

※ 응시수수료: 5,000원

※ 수입증지 납부 전 응시자 본인이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수

【등기우편 접수】

- 주소지: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, 총무과 인사팀 (무실동, 원주시청) (우 26384) 채용담당자
-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빠른 등기 소인분에 한함(택배·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)
-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다음 날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응시번호 확인 필수
(임기제 채용담당자 : ☎ 033-737-2224)
-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으로 교환하여 동봉
 - ※ 통상환증서 받을 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기재하여 교환
 - ※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예정

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2. 3. 16.[수] 예정

다. 면접시험 ※변동 가능

임용분야	일 정
농업기계관리	2022. 3. 17.(목)
건강생활(운동처방)	2022. 3. 17.(목)
안전요원	2022. 3. 22.(화)

라. 최종합격자 발표: 2022. 3. 23.[수] 예정

마. 최종임용: 2022. 3월말 또는 4월 초

- ※ 시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※ 합격자 발표 공고문은 원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
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장소 · 일정 등 공고하며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

7

제 출 서 류

【하단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등 사용 없이 순서대로 제출】

가. 응시원서 1부 [별지 제1호 서식]

- 응시 수수료: 5,000원
※원주시수입증지형태로 납부해야함,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
- 수 입 증 지: 원주시청 1층 민원과(6번 창구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 (이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)

나. 이력서 1부 [별지 제2호 서식]
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/ 증빙자료 없을 시, 기재금지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※미 제출시, 기재금지
-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

다. 자기소개서 1부 [별지 제3호 서식]

라. 직무수행 계획서 1부 [별지 제4호 서식]

마.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[별지 제5호 서식 참조]
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.
- 필수 기재사항 ※미기재 시,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
 - 근무기간*(주당 근무시간 포함), 담당업무 기재
 -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(소속, 직위, 성명, 연락처)를 기재하며, 발급기관 관인 날인

*근무기간

- 상근(주40시간 이상) : 경력 전부 인정
- 비상근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
ex) 2년간 주20시간 경력 → 1년으로 인정
-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

- 경력인정 기한
 - 일반임기제: 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 - 시간선택제 임기제·한시임기제: 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-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

바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
- 경력 확인용으로 근무기관과 이력이 동일해야 함.
-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요구 가능함.

사. 자격증 사본(자격기준이 되는 자격증은 필수제출, 그 외 선택사항) 1부

아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취득증명서) 1부

-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·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(1년 이내 발급본에 한함)

자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[별지 제6호 서식]

차. 주민등록초본 각1부 [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]

카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별지 제7호 서식]

타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[별지 제8호 서식]

파.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[선택사항]

- 각종 증명서 등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
-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

8

유의사항

- 가. 보수 및 복무는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, 「공무원 연금법」, 「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이 적용됩니다.
- 나. 원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공고를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다.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원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요구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마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. (재공고인 경우 응시자 발생 시 추가 재공고 없이 다음 시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)
- 바. 면접시험 불합격 등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인원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사. 추후 안내하는 면접등록시간까지 면접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.
- 아.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기간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자.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차. 임기제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,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·비영리 업무에 종사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 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카.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하며,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타.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 담당자(☎033-737-2224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